

#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36

2016. 8. 30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 제안

김은희 부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함주연 연구원

### |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2013.6.4.)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설계의도 구현’을 법정업무로 규정
-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대가의 범위, 예산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이에 설계의도 구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 방안을 제시

### | 정책제안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가기준을 마련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기준을 명시하고 현행 사후설계관리는 설계의도 구현으로 통합
-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감리용역 계약조건에 준하여 설계의도 구현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 설계의도 구현 예산 비목을 신설

## 1 설계의도 구현의 개요

### ■ 설계의도 구현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설계 완료 후, 시공 과정 중 초기 설계 목적 및 의도에 대한 설계자 협의 없이 설계안을 변경하는 경우, 초기 설계안과 상이한 건축물로 준공되어 건축디자인과 시공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 현행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건축설계 이후 수행되는 사후설계관리업무와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설계업무에 대한 후속 지원과 구분이 없고 대가도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설계의도 구현’을 명시함으로써, 공모 우선 적용대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 의도 구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제화하였고 관련 내용 및 책임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함
- 그러나 시행령에서 제시한 업무내용은 실제 설계의도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되거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더욱이 대가 산정기준 및 계약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발주처의 예산 수립, 설계자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급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 설계의도 구현 관련 근거법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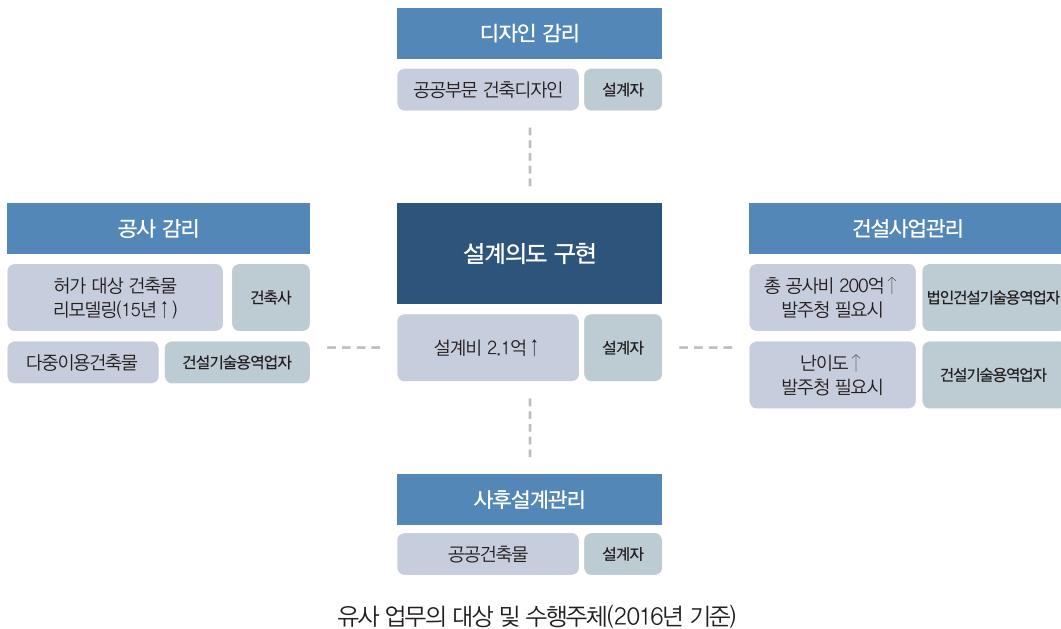
- 2014년 6월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통해 설계의도 구현 적용 대상 및 주요 업무, 확인 방법을 규정함
- 본 법규정에 따르면 설계의도 구현의 적용 대상은 공모 우선 적용대상 공공건축물에 한정되고, 주요 업무는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 여건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 보완 업무로 설정함
-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함

<p>「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p>	<p>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 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p>	<p>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 2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설정

### ■ 유사 업무 비교를 통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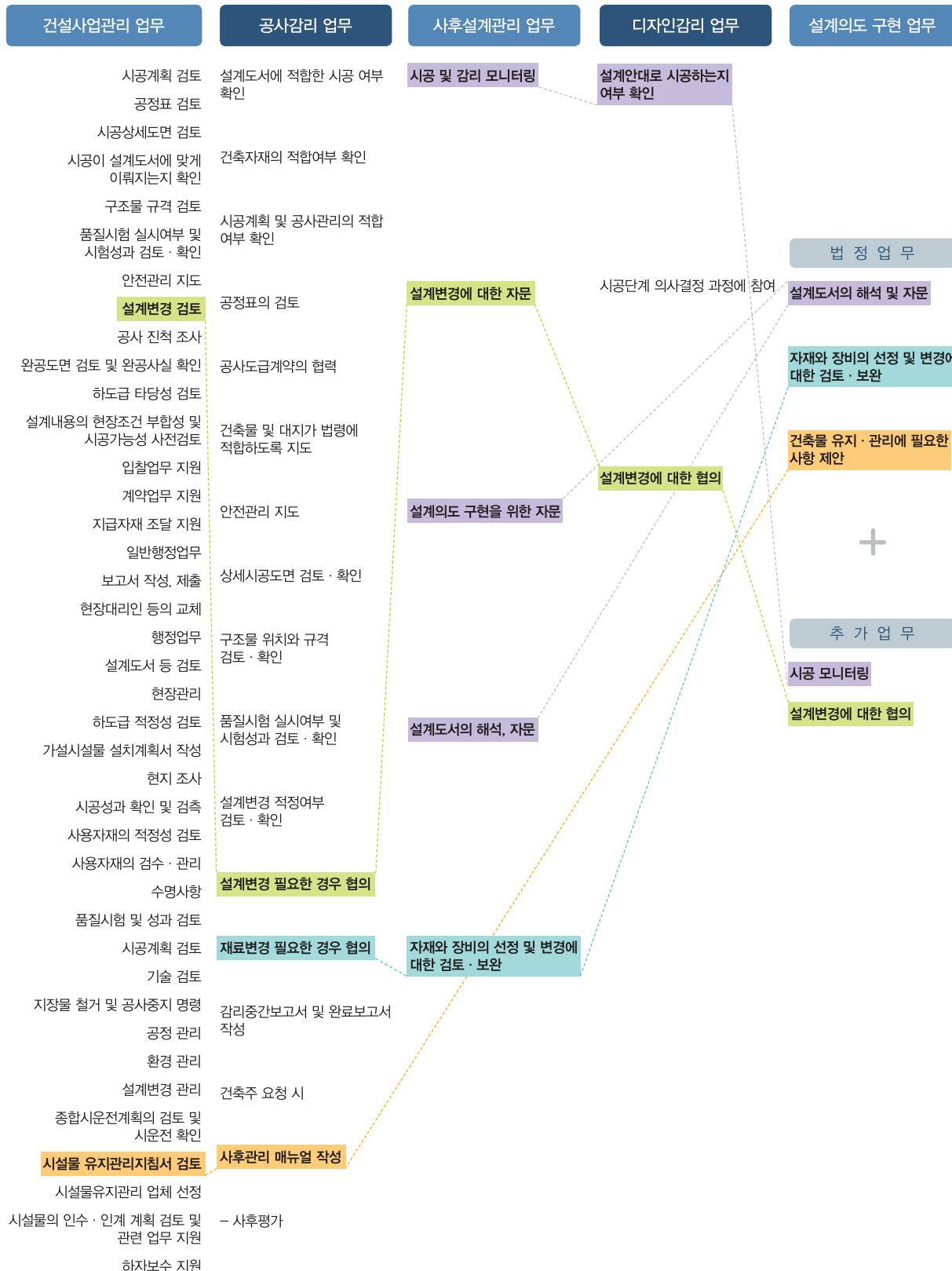
- 현행 건축사의 업무 중 설계의도 구현과 목적 또는 수행시기가 유사한 업무로 「건축사법」의 사후설계관리와 공사감리, 「건축기본법」의 디자인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있음
  - 사후설계관리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자가 시공 및 감리 모니터링, 설계 변경에 대한 자문,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이며 설계의도 구현과 동일한 업무로 규정할 수 있음
  - 디자인감리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에 한해 설계자가 시공단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설계 변경 시 자문 및 검토하는 업무이나 설계자의 참여 범위가 제한적임
  - 공사감리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적합한 시공 및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시공도서를 검토하는 업무로 시공의 적합성에 중점을 둠
  - 건설사업관리란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이거나 난이도가 높은 건축물,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사가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며, 설계 변경, 사용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업무로 공사감리와 유사함



- 설계의도 구현 유사 업무는 모두 건축설계 종료 이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 또는 건축사의 참여를 통해 건축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정 설계의도 구현 업무와 더불어 초기 건축물 설계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시공단계에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를 추가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법정 설계의도 구현 업무 외 ‘시공 및 감리 모니터링’과 ‘설계 변경에 대한 협의’는 설계 의도 구현 업무로 설정

###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설계의도 구현 유관 업무

- 국내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시공지침으로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공사과정에 담당 원(발주의 대리인)이 검토 · 승인해야 할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유관 업무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로 적용할 수 있음
  - 23종의 공사 중 외관 및 디테일과 상관성이 있는 외벽공사, 유리 · 창호공사, 수장공사 등 9가지 공사에 대해 담당원이 승인해야 할 업무가 설계의도 구현 업무와 상관성이 있음
  - 견본을 통한 자재의 승인, 시공상세도의 승인, 시공견본(목업)의 승인, 설계도서나 시방서의 누락사항에 대한 승인 등이 이에 해당함



설계의도 구현과 유사 업무 비교

### 표준시방서의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

공사*	마감자재에 대한 승인	시공상세도에 대한 승인	시공견본에 대한 승인
조적공사	조적의 색상, 질감에 대한 승인		벽쌓기 견본에 대한 승인
석공사	석재의 재질, 색상,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에 대한 승인	석재 나누기도 승인	
타일 · 테라코타공사	타일의 재질, 질감에 대한 승인	타일 나누기도 승인	
목공사	대체 수종에 대한 승인	시공상세도 승인	
외벽공사		커튼월, 패널 등 시공상 세도 승인	
미장공사	미장재료에 대한 승인		견본바름에 대한 승인
유리 · 창호공사	유리, 새시의 색상, 표면마감에 대한 승인	시공상세도 승인	
도장공사	견본품의 색상, 광택에 대한 승인		도장업자의 조색에 대한 승인
수장공사	재료의 대체품에 대한 승인 견본의 색상, 무늬 등에 대한 승인	시공상세도 승인	시험시공에 대한 승인

\*여기에서의 공사란 마감공사를 의미함

### ■ 해외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규정 및 주요 내용

- 미국의 경우 AIA Documents<sup>1)</sup>와 CSI시방서<sup>2)</sup>를 분석한 결과 AIA Documents A201과 B141, CSI시방서 1장의 일부 내용이 설계의도 구현과 유사함
- 독일의 경우 설계자와 엔지니어 업무대가를 규정한 HOAI<sup>3)</sup> 제5단계(실시설계업무)와 제9단계(대상물관리업무) 일부가 설계의도 구현 업무와 유사함
- 일본의 경우 2009년 업무보수기준<sup>4)</sup>을 개정하면서 설계의도 전달을 기준 감리자의 업무에서 설계자의 업무로 전환하였으며,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설계의도 구현과 매우 유사함
- 미국, 독일, 일본의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로는 시공자가 제안하는 대안(VE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외벽 · 내부공사 등 시공견본의 시공상세도면, 사진 · 샘플 등 검토 및 승인, 공사도서의 모든 변화 추적, 제3자(이웃주민 등)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관계기관의 각종 검사 및 신고 등에 협력 및 입회, 준공 후 설계자의 책임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언으로 규정할 수 있음

1) 건축주, 건설업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기술사들이 프로젝트 계약을 서로 체결할 때 사용하는 미국건축사협회(America Institute of Architects)에서 발간한 표준계약문서

2) 미국의 시방서는 대부분 CSI(Construction Specifications Institute) 형식을 따르며 업무의 범주를 대표하는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짐. 1장은 공사 계약에 대한 일반필요조건과 설계자와 하도급업자의 관계 등을 명시하는데, 하도급업자가 설계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출물의 내역, 테스트, 시공견본, 샘플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함

3) 독일의 설계자와 엔지니어 업무에 대한 대가는 규정하고 있는 HOAI(Honorarordnung für Architekten und Ingenieure)는 건물 용도에 따라 대가 영역을 1~5로 구분하고 대가영역별로 공사비에 따른 최소, 최대 대가금액을 규정함

4) 일본 건축사법 제25조에 의거, 건축주와 건축사무소 개설자가 설계, 공사감리 등의 계약을 할 때의 업무보수 산정방법 등을 제시. 15종의 건축 물 유형마다 표준 업무 인 · 시간수를 정하고 있으며, 설계와 공사감리를 종합, 구조, 설비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인 · 시간수를 연면적 별로 제시함

### 해외의 설계의도 구현에 해당하는 업무 세부사항

단계	업무	미국	독일	일본
설계	시공자가 제안하는 대안(VE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시공자의 RFI에 대한 답변 및 기록	○		○
	공사와 설계의도와의 부합 여부 검사	○		○
	중요부분 시공상세도의 검토 및 승인	○	○	○
	자재와 제품의 정보, 샘플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
	외벽, 내부공사 등 시공견본의 검토 및 승인	○		
	시공자가 요청하는 자재 변경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공사도서의 모든 변화 추적	○		
	개별 공정 작업에 따른 실시설계의 수정		○	
	제3자의 설계내용에 대한 조정			○
시공	제3자의 도면이 실시설계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제3자(이웃주민 등)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관계기관의 각종 검사 및 신고 등에 협력 및 입회			○
	공사완료 여부 검사 및 공사완료 증명서 발급	○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의 감독		○	
	건축물 현황에 대한 문서 작성		○	○
	준공 후 설계자의 책임이 아닌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조언			○
	준공 후 설계에 관련된 업무			○
유지 · 관리				

###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안)

- 설계의도 구현 유사업무, 표준시방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시공단계 업무 10종(필수업무)과 유지관리단계 업무 3종(선택업무)으로 구성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안)을 제안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 최종(안)

시공단계(필수업무)	유지 · 관리단계(선택업무)
(1) 설계도서의 해석 · 자문	(6) 건축물 유지 · 관리에 대한 제안
①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에 대한 자문(ex.전시설계) ② 설계도서에 대한 질의응답 ③ 제3자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2) 자재와 장비의 선정 · 변경에 대한 검토 · 보완	
④ 디자인 관련 자재 · 장비의 선정에 대한 검토 · 확인 ⑤ 디자인 관련 자재 · 장비의 변경에 대한 검토 · 확인(변경도서 검토 · 확인 포함)	⑪ 개보수, 리모델링 시 자문 ⑫ 유지 · 관리 모니터링 ⑬ 설계자의 책임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언
(3) 시공 모니터링	
⑥ 시공상세도의 디자인 관련 사항 검토 · 확인 ⑦ 외벽, 내부공사 등 시공견본의 검토 · 확인	
(4)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⑧ 디자인 관련 설계 변경 시 협의(협력업체 협의 포함)	
(5) 사용 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⑨ 설계의도 구현 업무보고서 작성 ⑩ 건축물 확인서 작성	

### 3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안)

#### ■ 유사 업무의 대가산정 기준

- 현행 건축설계 및 설계의도 구현 업무와 관련되는 대가산정 기준은 공사비요율방식<sup>5)</sup>과 실비정액가산방식<sup>6)</sup>이 있음
  - 일반적으로 공사비요율방식은 과업의 내용이 명확하며 총 공사비 산정이 용이한 경우에 적합하고,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이 불확정적이거나 그로 인해 명확한 사업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경우 세부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용역계약 이전에 발생되는 과업범위가 예측 가능하므로 건축설계 업무와 동일하게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

#### ■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안)

- 공공건축설계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0인(중급기술자 이상)을 대상으로 기준설계안<sup>7)</sup>에 대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량을 조사
  - 표준업무 세부 항목별 투입되는 일수와 인원수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다시 공사비 요율로 환산하여 산출
  - 조사 결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은 전문가 등급별로 대가산정 기준이 다르며 고급기술자 기준 평균 78.51인 · 일로 나타남. 이를 대가산정 방식 적용 시 건축설계비의 8.66%가 산출됨
- 이를 토대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대가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의 8%로 제안<sup>8)</sup>

건축사(보) 등급별 설계의도 구현 대가요율 비교 (업무량 : 78.51인 · 일, 설계비 : 417,000,000원)

등급*	노임단가 a	인 · 일수 b	직접인건비 d = a × b	직접경비 0.1d	제경비 1.1d	설계의도 구현 e = d + 0.1d + 1.1d	설계비 대비 e/c (%)
기술사 (기술사 자격)	340,765	78.51	26,753,460	2,675,346	29,428,806	58,857,612	14.11
특급기술자 (산업기사 + 경력13년)	249,900	78.51	19,619,649	1,961,965	21,581,614	43,163,228	10.35

5)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6)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7) 기준설계안의 조건 : 공사비 100억 원(200만 원/m<sup>2</sup>), 연면적 5,000m<sup>2</sup>, 업무시설, 총 공사기간 2년, 제2종(보통) 중급도서 작성

8) 국내 설계의도 구현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설계의도 전달 업무의 대가기준이 설계비의 약 9%인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등급*	노임단가 a	인 · 일수 b	직접인건비 $d = a \times b$	직접경비 0.1d	제경비 1.1d	설계의도 구현 $e = d + 0.1d + 1.1d$	설계비 대비 e/c (%)
고급기술자 (산업기사 + 경력10년)	208,973	78.51	16,406,470	1,640,647	18,047,117	36,094,235	8.66
중급기술자 (산업기사 + 경력7년)	181,229	78.51	14,228,289	1,422,829	15,651,118	31,302,235	7.51

\*등급 구분 출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

## 4 정책제안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구체화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세부내용과 대가기준을 명시
  - 특히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사후설계관리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설계의도 구현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 설계의도 구현 예산 비목을 신설하여 실행력을 제고

시행령 · 기준 지침 제 · 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자의 참여 내용 및 책임범위 구체화</li> <li>설계의도 구현 세부지침 추가</li> </ul>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기준 추가</li> <li>사후설계관리를 설계의도 구현으로 통합</li> </ul>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의도 구현 비목 신설</li> </ul>	

관련 법률 개정 방향

## 시행령·기준·지침 제·개정(안)

	현행	개정(안)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p><b>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기준 등)</b></p> <p>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p> <p>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p> <p>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 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기준 등)</b></p> <p>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p> <p>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p> <p>(추가) 3. 시공에 대한 모니터링</p> <p>(추가) 4. 디자인 관련 설계 변경에 대한 협의</p> <p>(③ (생략))</p> <p>(추가) ④ 제2항과 3항에서 규정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추가) 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업무에 대한 대기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p><b>제5조(업무의 범위)</b>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설계업무</p> <p>    가. 기획업무</p> <p>    나. 건축설계업무</p> <p>    다. 사후설계관리업무</p>	<p><b>제5조(업무의 범위)</b>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설계업무</p> <p>    가. 기획업무</p> <p>    나. 건축설계업무</p> <p>    다. <u>설계의도 구현</u></p>
	<p><b>제6조(설계업무)</b> ④ 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p>	<p><b>제6조(설계업무)</b> ④ 제5조제1호다목의 “설계의도 구현”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감리 모니터링, 설계 변경에 대한 자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작성,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p>
	<p><b>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b></p> <p>③ 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기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p>	<p><b>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b></p> <p>③ 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대가는 <u>건축설계용역(기본·중간·실시설계) 예산의 8%로 산정한다.</u></p>

## 계약 및 예산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개정(안)
	<p><b>(신설) 제5장 설계의도 구현 용역계약조건</b>          제6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의도 구현”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을 말한다.</li> <li>“설계자”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로서, 설계의도 구현 용역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li> <li>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설계의도 구현 세부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li> </ol> <p>제62조(계약문서) ① 설계의도 구현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 외에 「설계의도 구현 세부지침」이 계약 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p> <p>제63조(계약담당 공무원 및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의도 구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의도 구현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설계의도 구현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의도 구현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설계의도 구현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료의 제공</li> <li>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li> <li>기타 설계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설계의도 구현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li> </ol> </li> <li>계약담당 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설계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li> </ol> <p>②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li> <li>발주기관과 설계자 간에 체결된 설계의도 구현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자는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건축물을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li> </ol> <p>제64조(설계자의 근무수칙) ①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설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설계자는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li> <li>설계자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의도 구현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 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li> </ol> <p>제65조(계약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의도 구현 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계자를 지도·감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li> <li>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li> <li>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li> </ol> <p>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자가 계약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p>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p>제66조(설계의도 구현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설계자는 계약체결 즉시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 시점에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설계의도 구현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계획서</li> <li>2. 설계자 및 업무대행자 지정 신고서와 경력확인서</li> <li>③ 제2항2호의 설계자 및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실질적 설계책임자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li> <li>④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2항2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해당 건축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li> </ol>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신설) 25. 설계의도 구현비(420-03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작성,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등을 수행하는 비용</li> </ul> </li> <li>2. 세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의도 구현비는 “설계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의도 구현의 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을 따름</li> </ul> </li> </ul> </li> </ol>

김은희 부연구위원 (044-417-9622, ehkim@auri.re.kr)

염철호 연구위원 (044-417-9677, chyoum@auri.re.kr)

함주연 연구원 (044-417-9691, jyham@auri.re.kr)

